

## 『여성학연구』 간행규정

### 제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『여성학연구』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 조 (발행)

『여성학연구』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, 매년 4월 30일, 10월 31일에 발간한다.

### 제3 조 (원고내용)

- (1) 『여성학연구』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.
- (2) 『여성학연구』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/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,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/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.
- (3) 『여성학연구』의 원고는 연구논문, 기획논문, 특집,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.
  - ① 연구논문 :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
  - ② 기획논문 :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
  - ③ 특집 : 대담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
  - ④ 서평 :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, 간행물, 논문에 대한 서평

제 4 조 (논문투고자격)

- (1)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/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.
- (2)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.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.

제 5 조 (원고투고 및 접수)

- (1)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,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- (2)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(<https://pusanwomen.jams.or.kr>)을 통해 제출한다.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.

- 주 소 : (46241)

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

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『여성학연구』 편집위원회

- 전 화 : 051) 510-1893

- 이메일 : [pusanwomen@pusan.ac.kr](mailto:pusanwomen@pusan.ac.kr)

- (3)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.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.
- (4)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.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.
- (5) 원고는 반드시 『여성학연구』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

한다. 『여성학연구』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- (6)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.

#### 제 6 조 (편집위원회)

- (1)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『여성학연구』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(2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.
- (3)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- (4)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(5)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- ① 원고접수
  - ② 심사위원 위촉
  -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
  - ④ 관련 규정의 제·개정
  - ⑤ 기타 『여성학연구』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
- (6)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포함)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 7 조 (원고심사절차)

- (1)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.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, 혹은 『여성학연구』의 성

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.

- (2)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.
- (3)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- (4)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,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(5)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.

제8 조 (심사기준)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.

- (1) 연구의 독창성
- (2) 연구방법의 타당성
- (3) 전개의 논리성
- (4) 문장력
- (5)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
- (6)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
- (7) 형태사항의 적절성(원고분량, 도표, 요약 등)

제9 조 (심사결과판정)

- (1)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“게재”, “수정 후 게재”, “수정 후 재심”, “게재 불가”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,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- (2)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.
  -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,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.

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게재 불가	심사결과
3				게재
2	1			게재
2		1		수정 후 게재
2			1	수정 후 게재
	3			수정 후 게재
1	2			수정 후 게재
	2	1		수정 후 게재
1	1	1		수정 후 게재
1	1		1	수정 후 게재
		3		수정 후 재심
	2		1	수정 후 재심
1		1	1	수정 후 재심
1		2		수정 후 재심
	1	1	1	수정 후 재심
	1	2		수정 후 재심
		2	1	게재 불가
			3	게재 불가
1			2	게재 불가
	1		2	게재 불가
		1	2	게재 불가

\*숫자는 심사위원의 수

-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“수정 후 게재”,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,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초심 결과 “수정 후 재심” 판정을 받은 경우의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.

초심			비고
심사자 A	심사자 B	심사자 C	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'게재'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게재 불가	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'게재'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
게재	수정 후 재심	게재 불가	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'게재'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게재 불가	
게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'게재'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확정. 한 명만이 게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,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\*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,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.

- (3) 기타 게재순서,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(4)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 (수정 및 이의신청)

- (1)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(2)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,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.
- (3) 심사결과 "게재 불가"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,

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

- (4)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모든 심사  
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편집위원회는 이  
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  
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,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(원고 편집)

- (1)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 
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.
- (2) 게재될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며,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 
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
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(원고발표)

최종 게재 원고는 '부산대 여성연구소' 홈페이지(<http://mypage.pusan.ac.kr/women>), KCI,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, 이에 대  
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 (판권)

『여성학연구』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.

(제정) 2007.10.31.

(1차 개정) 2010.06.30.

(2차 개정) 2018.04.30.

(3차 개정) 2019.06.30.

(4차 개정) 2022.10.31.

(5차 개정) 2024.04.30.